

# 뉴홈 4차(화성동탄2 C14블록) 사전청약(선택형 공공임대)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다문화가족) 안내

(홈페이지 게시용)

○ 유형 및 배정호수 : 총 2세대

지구 (공급유형)	블록	유형	주택형	추천 대상자	예비 대상자	비 고
합 계				2	-	○ 위치: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 등 일원
화성동탄2	C14	공공임대 (선택형)	52	2	-	○ 신청서 접수 마감일: 2024.1.5.(금) 18:00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4.1.4.(목)(예정) ○ 경기도 확정통보일: 2024.1.17.(수)(예정) ○ 청약접수일: 2024.1.22.(월)~1.23.(화)(예정) ○ 문의전화: 1670-4007, 031-8077-7979 ※ 상기 세대수 및 분양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분양승인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택형의 숫자는 전용면적(m<sup>2</sup>)을 의미

- 접 수 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다문화가족 담당자)
- 신청서 접수 마감일: **2024. 1. 5.(금) 18:00 방문신청 (단, 휴일은 제외)**
- 경기도 최종 확정 명단 통보일: **2024. 1. 17.(수)**
- 선정방법 : 배 점 기 준 표(아래 참조)의 종합점수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문 의 처 : 수원시 다문화정책과(☎031-228-2709)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다문화가족 담당자
- 문서번호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주택판매2부-4626(2023.12.20.)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주택판매2부-4690(2023.12.22.)호
- 분양문의 : ☎ 1670-4007, 031-8077-7979

○ 다문화가족 특별공급 신청 자격기준 및 세부요건

자격기준	세 부 요 건
다문화가족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이며, 2.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성 년 자	1.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2. 미성년자 세대주 중 아래의 경우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국적 미취득자는 신청인이 될 수 없음(한국국적 배우자가 신청)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 존·비속,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 단, 배우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 판정
지 역	1. 주민등록등본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
청약통장	1.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며 2. 월 납입 6회 이상
제외대상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대상자의 세대에 속한 자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에 따라 특별공급을 받은 세대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4.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내에 있는 자 등 * <u>당첨 이후라도 자격검증 후 부적격자는 계약 불가 및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로부터 최대 6개월간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불가합니다.</u> 제외대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급처 안내문 및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 제출서류(신혼부부 특별공급 준용)

종 류	세부내역			
	(서식1) 특별공급알선신청서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서식6) 함께 제출) (서식2) 주택 알선순위 배점 기준표, (서식3)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주민등록등본(상세) 또는 초본	-세대주, 세대원 및 주소지 등 확인(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가 다를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 *입양인 경우에는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일 확인			
기본증명서(상세)	-국적취득 확인(필요 시, 해당자에 한함)			
청약통장 가입확인서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며, 월납입 6회 이상 확인 (청약통장 가입은행 발급)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세대주, 성년 세대원의 직업유무 및 자영업 운영 유무 확인			
무주택 입증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 (최근 10년간 전국 단위 주택분, 세대구성원 전원) *납부이력 있을 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등 추가 제출			
소득입증서류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u>성년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u>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신규사업자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사업자등록증	*국 민 연 금 관리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세무서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서식4)		*접수장소
-임신진단서 -장애인증명서	-배점기준표 참고, 해당자에 한함(가점)			

## ○ 신청시 유의사항

- 1)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상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사전청약 홈페이지(www.사전청약.kr)에서 별도로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 청약 접수와 관련하여 별도 개별 안내하지 않으며, 미접수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 2)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세대 내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1인 중복청약이나 세대원 중복청약으로 1세대 내 2건 이상 중복·교차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3) 당첨자 발표 이후라도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확인한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체결 불가, 최대 6개월간 다른 공공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불가의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 자격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투기과열지구,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제공되는 특별공급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구에 공급되는 주택

- 4) 배점표 작성 시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배점을 하향조정하지만, 실제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경우는 상향조정 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5) 본 안내문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을 위해 필요한 대략적 사항만을 기재한 것으로,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공급일정, 유의사항 등의 사항과 관련하여 공고문 미확인 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진행일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24.1.5. 마감) → 경기도 최종 확정 명단 통보('24.1.17.)  
→ 인터넷청약접수('24.1.22.~1.23.(예정))  
\*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2]

## 배점기준표에 따른 배점 및 월평균소득

### ① 배점기준표에 따른 배점

평점 요소	배점	배점기준		신청자사항		점수	비 고 (구비서류)
		기준	점수	연월일 등	기간 등		
무주택 기간	20	10년 이상	20	. . . .	년 월		① 세대원 전원 소유경력이 없을 경우 : 신청자가 30세가 되는 날(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공고일 ② 세대원 1인이더라도 소유경력 : 주택 최종 처분일(처분일이 신청자가 30세가 되는날이나 혼인신고일 이전일 경우 ①을 따름)~공고일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지방세 미과세 증명서), 필요 시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등
		9년 이상~10년 미만	18				
		8년 이상~9년 미만	16				
		7년 이상~8년 미만	14				
		6년 이상~7년 미만	12				
		5년 이상~6년 미만	10				
		4년 이상~5년 미만	8				
		3년 이상~4년 미만	6				
3년 미만	4						
배우자와 혼인 기간	20	15년 이상	20	. . . .	년 월		* 혼인기간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혼인 지속기간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3년 이상~15년 미만	17				
		11년 이상~13년 미만	14				
		9년 이상~11년 미만	11				
		7년 이상~9년 미만	8				
		5년 이상~7년 미만	6				
3년 이상~5년 미만	4						
세대원 구성	15	5인 이상	15		명		* 세대원 : 신청자,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배우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4인	11				
		3인	7				
		2인 이하	3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15	10년 이상	15	. . . .	년 월		* 신청자가 특별공급 해당 지역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주민등록등본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8년 이상~10년 미만	13				
		6년 이상~8년 미만	11				
		4년 이상~6년 미만	8				
		2년 이상~4년 미만	5				
		2년 미만	3				
소득 요건	20	100% 이하	20	원	%		* 가구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합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비율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 소득입증서류 및 심사방법 등 관련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고시)'을 준용함. 단, 가구원 수는 세대원 전원의 수를 의미
		100%초과~120% 이하	15				
		120%초과~140% 이하	10				
		140%초과	5				
국적취득 여부	10	국적취득	10	미취득/취득			* 국적취득 : 신청자 및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 주민등록증,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미성년 자녀 수	가점	미성년자녀	3명 ↑ 5 2명 3 1명 1	명			* 신청자 및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 (만 19세 미만)의 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중 장애인		증증장애인	2명 ↑ 5 1명 3	명			* 세대원 중 증증장애인의 수 ⇒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b>본인 배점 합계</b>							<b>* 허위 작성 시 무효 처리</b>

※ 동점자 처리기준(월단위로 환산하여 오래된 순으로 함): 배우자와 혼인기간>무주택기간

(뒷면에 계속)

② 월평균소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2에서 정하는 성년자로서 규칙 제2조제2호의3에 해당하는 자 전원의 소득

세대구성원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월평균소득(원)
소득 합계				
	본인		-	
	배우자		-	
	자녀 1		-	
	자녀 2		-	
	부모 1		-	

본인은 우선순위 배점기준과 세대원 전원 월평균 소득 작성에 있어 허위사실 없이 정확히 기재하였으며, 최종점수에 이의가 없음을 서명합니다.

신청인

성명

년 월 일

(인)

확인자

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주무관 (인)





## 임신증명 확인서

(다문화가족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자용)

본인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하고, 임신 중에 있음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다문화가족 국민주택 특별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는 경우, 출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반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의료기관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아울러 출산여부 관련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허위임신·불법 낙태로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의 취소 및 해약조치에 대해 이의제의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① 신청자	
② 진단서 발급일	년 월 일
③ 분만예정일	년 월 일
④ 요양기관명	
⑤ 담당의사(면허번호)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위 임 장

( 대리인 )

- 성 명 : (인)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위임자와 관계 : 위임자의 ( )

다문화특별공급(분양·임대)을 신청함에 있어 구비서류 일체에 대하여 상기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함.

( 위임자 )

- 성 명 : ( 인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년            월            일

시·도지사 귀하